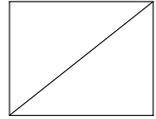


이 자료는 내부 회의용이오니  
회의가 끝난 후 자리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



의안번호	제2012-03호
상 정 년 월 일	2012. 3. 28. (제6차 국가통계위원회)

심  
의  
사  
항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2. 3. 28.



# 목 차

I. 검토배경 및 운영현황 .....	1
II. 국가통계위원회의 문제점 .....	3
III.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 .....	4
1. 추진방향 .....	4
2. 운영 개선방안 .....	4
3. 향후 추진계획 .....	6
붙임1. 2011년 작성승인 통계 현황 .....	7
붙임2.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8

# I. 검토배경 및 운영현황

□ (검토배경) 국가통계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09.6)된 후 국가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통계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운영현황

- (개최횟수) '10년 전체 개최횟수나 상정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본회의의 경우 매년 2회 정도로 개최하였고 분과위의 경우 연도별로 편차가 큼

(회, 건)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전체(안건)	23(37)	14(30)	16(25) 9(12)   7(13)	11(26)	14(32)
· 본회의(안건)	2	1	1(3)	2	2(9)
· 분과회의(안건)	21	13	9(12)   6(10)	9	12(23)

\* '09년은 국가통계위원회 격상이전과 이후로 구분

- (참석률) 전체 참석률은 '09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본회의의 경우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분과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참석률이 상승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참석률(%)	189/299 (63.2)	126/170 (74.1)	148/204 (72.5)	121/160 (75.6)	131/176 (74.4)
본회의	2 43/60 (75.0)	1 25/28 (89.3)	1 22/27 (81.5)	2 43/52 (73)	2 33/55 (60.0)
	22 135/230 (58.7)	13 101/142 (71.1)	15* 126/177 (71.2)	9 78/108 (72.2)	12 98/121 (81.0)

- (개요) 통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로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 '08.12월 통계법 개정('09.7월 시행) 이전에는 통계청장이 위원장
- 법적근거 : 통계법 제5조의2 및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 본회의 구성 :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28명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정부위원(12명) : 과기부·행안부 등 10개 부처 장관 및 통계청장
    - 민간위원(5명) : 한은총재, 대한상의·중기중앙회 회장, KDI·보사연 원장
  - 위촉직 위원(11명) : 통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
  - 간사 : 통계청장
- 분과위 구성 : 분과별로 위원장 1명 포함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구성, 현재 정책·경제·사회·품질·지역 등 5개 분과를 운영 중
- 심의·의결 사항(통계법 제5조의2)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 장·단기 통계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II. 국가통계위원회의 문제점

### □ 통계청 이외 타부처의 관심 부족

- 통계청 이외에 한국은행, 국토해양부를 제외하면 국가통계 위원회에 부처단독 상정안건은 전무
- 부처 공동 상정안건은 4건으로 위원회의 장관급 격상후 증가하고 있음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전체(타부처*)	37(1건)	30(1)	25(1)		26(3)	32(3)
			12(1)	13(0)		
· 본회의(타부처)	5(0)	3(0)		3(0)	7(2)	9(1)
· 분과회의(타부처)	32(1)	27(1)	12(1)	10(0)	19(1)	23(2)

\* 단독안건 및 공동상정안건 포함

- 본회의의 당연직 및 위촉직의 참석률 하락, 대참율 증가

구 분	1차('09.10)	2차('10.6)	3차('10.12)	4차('11.3)	5차('11.11)
정부당연직 (참석대참)	83.0%/40.0%	66.7/62.5	서면회의	66.7/62.5	25.0/0
민간당연직	80.0/500.	80.0/50.0		60.0/66.7	60.0/66.7
위촉직	89.0	78.0		70.0	90.9
계	81.5	73.0		66.7	57.1

### □ 분과위가 국가통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경제분과 및 사회분과의 포괄범위가 커 세분화가 필요하고, 지역분과 및 품질분과는 상정되는 안건수가 한정
- 본회의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어려움

\* 본회의 상정안건 14건 중 2건만이 정책분과위에 상정되어 사전 논의 되었고, 본회의 상정안건의 부처간 사전 논의의 필요성 제기

### □ 통계책임관 및 전문가 활용 미흡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제7조)에 위원회 심의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활용이 미흡
- 각 부처 통계책임관의 참여가 부족하여 관심 저하

### Ⅲ.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1. 추진방향

- ◇ 국가통계위원회 상정안건의 다변화, 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 개편, 통계책임관 역할 제고 등을 추진
- ◇ 아울러 자체 안전발굴이 가능하도록 통계위원회 기능 강화

#### 2. 운영 개선방안

##### □ 국가통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개편

- 통계분야별로 경제1,2와 사회1,2로 구분하고, 정보분과 신설
  - 850여종의 승인통계 분류 기준인 분야별(15개)로 구분하여 각 분과에 배정하고, 통계정보화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해 정보분과 신설
  - 기존의 품질 및 지역분과 안건은 정책분과에 상정

##### <개편결과>

개편 전	개편 후	기능	통계책임관*
정책, 품질 지역분과	정책분과	통계발전계획, 유사중복통계 조정, 지역단위 통계의 개발·개선 등	기재부, 통계청
경제분과	경제1분과	국민계정, 재정·금융, 무역·외환·국제수지, 광공업·에너지, 도소매·서비스	지경부,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2분과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경기·기업경영, 농림·수산, 물가	농식품부, 국토부, 통계청
사회분과	사회1분과	인구, 고용·임금, 환경, 교육·과학	환경부, 고용부, 통계청, 교과부
	사회2분과	보건·복지·사회, 문화, 가계소비	문체부, 여성부, 복지부, 통계청
신설	정보분과	정보시스템 관련 표준화, 통합시스템 구축, 보안관련	행안부, 통계청

\* 통계청 국장 분과위 위원: 정책분과(정책국장), 경제1분과(경제국장), 경제2분과(조사국장), 사회1분과(사회국장), 사회2분과(개발원장), 정보분과(정보국장)

## □ 통계책임관 역할 강화

- 각 분과별로 통계책임관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처의 통계 위원회에 대한 관심제고와 안전상정 다변화
- 통계청장이 주관하는 통계책임관 회의를 본회의 전에 개최하여 안전 발굴 및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사전조율

## □ 안전 발굴과 연계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안전상정) 국가통계위원회에 각 부처가 원칙적으로 안전을 상정하도록 유도

\* 부동산, 고용 등과 같이 타 부처와 공동안건을 지속적으로 발굴

- ①새로운 통계 개발\*(붙임1 참조) ②새로운 통계 정보시스템 개발 ③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안전 ④국가통계 발전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⑤기타 이에 준하는 안전

\* 일정기준 이상(1억이상, 패널조사 등)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규정 신설(통계법 개정안 포함)

- (인센티브) 안전상정 촉진을 위한 예산 우선반영, 승인심의 과정 간소화, 정부업무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 (예산 우선반영) 승인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통계를 국가통계 위원회에 상정시 국가통계예산 사전검토에 우선 반영

- (승인심의 과정 축소)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는 국가통계 승인 시 검토사항을 대폭 간소하여 운영

- (정부업무 평가 반영)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통계기반정책관리 노력부문에 본회의 장관참석 및 안전상정을 평가에 포함

## □ 부처 통계책임관의 역할 및 위원회 기능 강화

- 통계책임관의 전문기능 보완을 위해서 통계위원회 분과위 위원장들을 해당부처 자문위원으로 위촉
  - 분과위 위원장들은 각 부처의 통계자문을 위해 자문단 운영(국가통계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안: 붙임2 참조), 필요시 연구용역
- **이용자그룹 협의체\***를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의 위원장 산하로 배치하여 위원회 자체적으로 안전 발굴이 가능하도록 추진
  - (기능) 해당분야 통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슈 및 통계발전을 위한 자문, 새로운 통계수요 발굴, 통계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 (구성 및 운영) 분과별로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용자 2~3명으로 구성하여 이용자 그룹협의체를 운영
- \* 통계청은 12개(경기, 고용, 교육, 국민계정, 농림어업, 물가, 사회, 산업, 서비스업, 소득소비지출, 인구)분야 통계별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전부처로 확대하여 운영 할 필요

## 3. 향후 추진일정

- 통계위원회 본회의 상정 : '12.3월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12.3월

## 붙임1 2011년 작성승인 통계 현황

연번	작성기관	통계명	작성형태	작성주기	분야	예산(천원)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사회조사	조사	2년	사회	77,00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보고	1년	보건	9550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보고	1년	보건	23,800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보고	1년	보건	23,000
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특화작물조사	조사	3년	농림	30,000
6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조사	1년	사회	66,728
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조사	1년	광공업	101,000
8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실태조사	조사	1회한	복지	196,000
9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조사	2년	사회	50,000
10	시장경영진흥원	전국 지역상권심층조사	조사	2년	도소매	130,000
11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사회조사	조사	1년	사회	46,000
12	보건복지부	급성심장정지조사	조사	1년	보건	500,000
1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사회조사	조사	1년	사회	200,000
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조사	1회한	사회	5,183,000
15	전라남도	전라남도사회조사	조사	1년	사회	119,000
1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제조업실태조사	조사	2년	광공업	38,000
17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	3년	사회	120,000
18	보건복지부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	3년	보건	485,000
19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사회조사	조사	2년	사회	50,000
20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사회조사	조사	2년	사회	50,000
2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실태조사	조사	5년	복지	400,000
2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인력의경력이동성조사	조사	3년	교육	80,000
23	국토해양부	2011년도 주거실태조사:임대주택거주가구	조사	1회한	주택	1,100,000
24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에너지소비 실태조사	조사	1년	에너지	350,000
2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사회조사	조사	1년	사회	150,000
26	보건복지부	HIV/AIDS신고현황	보고	1년	보건	10,000
27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조사	월	주택	650,000
2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가공	월	경기	0
29	전라북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	반기	고용	200,000
30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주요소득농산물조사	조사	2년	농림	40,000
31	통계청	전산업생산지수	가공	월	경기	3,000
3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사회조사	조사	2년	사회	50,000
3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관련산업일자리조사	조사	반기	고용	190,000
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사회조사	조사	1년	사회	84,000
35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부문완성공사원가분석	조사	1년	정보통신	5,200
36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	조사	2년	고용	976,000
37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사회조사	조사	2년	사회	53,000
38	통계청	녹색생활조사	조사	2년	환경	295,000
39	보건복지부	복지욕구실태조사	조사	1회한	복지	1,269,545
40	경상남도	경상남도경기종합지수	가공	월	경기	25,000
41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 기업실태조사	조사	1회한	광공업	340,000

## 붙임2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신규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 위원회를 둔다.</p> <p>1. (생 략)</p> <p>2. <u>경제분과위원회</u></p> <p>3. <u>사회분과위원회</u></p> <p>4. <u>품질분과위원회</u></p> <p>5. <u>지역분과위원회</u></p> <p>6. (신설)</p>	<p>제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경제1분과위원회</u></p> <p>3. <u>경제2분과위원회</u></p> <p>4. <u>사회1분과위원회</u></p> <p>5. <u>사회2분과위원회</u></p> <p>6. <u>정보분과위원회</u></p>
<p>제3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정책분과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과 유사중복통계의 조정 등 통 계작성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u></p> <p>2. <u>경제분과위원회 : 산업·물가 등 경제 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에 관한 사항</u></p> <p>3. <u>사회분과위원회 : 인구·가계</u></p>	<p>제3조(분과위원회의 기능) ----- -----.</p> <p>1. <u>정책분과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유사중복통계의 조정, 통계품 질진단의 수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단위 통계의 개발· 개선에 관한 사항</u></p> <p>2. <u>경제1분과위원회 : 국민계정, 재정· 금융, 무역·외환·국제수지, 광 공업·에너지, 도소매·서비스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u></p> <p>3. <u>경제2분과위원회 : 건설·주택·토지,</u></p>

등 사회 분야 통계의 개발· 개선에 관한 사항

4. 품질분과위원회 : 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분과위원회 : 지역단위 통계의 개발·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해당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①제2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③. (생략)

< 신 설 >

교통· 정보통신, 경기· 기업경영, 농림· 수산, 물가 등 통계의 개발·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1분과위원회 : 인구, 고용· 임금, 가계소비, 환경, 교육· 과학 등 통계의 개발·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2분과위원회 : 보건· 복지· 사회, 문화, 가계소비 등 통계의 개발· 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분과위원회 : 통계관련 각종 시스템 구축, 시스템 표준화, 자료 제공,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 소관 분야 부처의 통계발전을 위하여 통계자문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